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7. 19. 이수진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4. 7. 2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2024. 8. 20.)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4. 8. 23.)

상정 · 축조심사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4. 11. 20.)

상정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4. 11. 21.)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비하여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은 시설로써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

에 실질적인 역할이나 필요한 지원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에 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던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용어와 정의를 개정함으로써 상담, 돌봄, 건강지원, 노년사회화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함.

또한, 노인의 소통 공간뿐만 아니라 공동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경로당의 경우 노인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제8호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현행법상 양곡구입비, 냉·난방비 등 제한된 범위의 경로당 지원에서 개정안과 같이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고령화로 경로당 이용 대상 노인이 증가하고 운영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영위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경로당 운영지원(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제외)’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어(「보조금법 시행령」 [별표2]), 원활한 입법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

※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은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2]가

개정되어 부식구입비에 사용이 가능함.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